의 안 번 호	제102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보건소 서명옥
제출 연월일	2015. 6. .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목적 조항 내용을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나.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다. 안 제3조 “조례의 범위”를 “적용 범위”로 수정한다.

라.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마. 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삭제한다.

바. 안 제8조제3항을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사. 안 제8조의2제3항을 “그 밖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한다.

아. 안 제9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4. 검토의견

가. 구의회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서의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 및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지원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 동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현행안과 같음)	
1. (현행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개정안과 같음)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던 행위를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수정안 동의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삭 제>	수정안 동의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환경의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동의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수정안 동의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1. (개정안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3. (개정안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남구보 및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의2(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①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삭 제>	수정안 동의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③ (현행과 같음)	수정안 동의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해촉, 직무수행 및 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동의**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및 감경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수정안 동의**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수정안 동의**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수정안 동의**

나.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강남구의회 수정사항이 목적 조문의 뜻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중복된 내용 삭제, 문구를 명백하기 위한 자구 정정,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므로 구의회에서 의결 이송되어온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효과를 입는”을 “영향을 받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의 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정하고”를 “정하고,”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을 “금연환경의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버스정류장”을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남구보”를 “강남구보 및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 급”을 “각급”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한 자”를 “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영향을 받는----------.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정하고, ---------- ---------- 금연환경의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1. ---------- ---------- 도시공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3. ----------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남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 ---------- 강남구보 및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 각급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④ (생 략)	제9조(과태료) ① ---------- ---------- 한 사람---------- ----------. ②~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소 보건행정과	
연 락 처	(02) 3423 - 7032